

정정 신고 (보고)

2022년 10월 2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E-스마트인덱스증권투자신탁 제1호[주식-파생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17

3. 정정 내용 :

- 운용역 변경(유서훈 운용역 → 서민웅 운용역),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
요약정보						
투자실적 추이	-	업데이트				
운용전문 인력	유서훈 운용역	서민웅 운용역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
2. 집합투 자기구의 연혁	(추 가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변경시행일</th> <th>변경 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2.11. 2</td> <td>운용역 변경(유서훈 운용역 → 서민웅 운용역),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2022.11. 2	운용역 변경(유서훈 운용역 → 서민웅 운용역),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				
2022.11. 2	운용역 변경(유서훈 운용역 → 서민웅 운용역),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					
5. 운용전 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유서훈 운용역 다.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· 삼성글로벌엠브렐러한국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유서훈 운용역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서민웅 운용역 다.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· 삼성글로벌엠브렐러한국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서민웅 운용역				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	-	업데이트	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
2. 연도별	-	업데이트			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설정 및 환 매 현황 3.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 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 의 권리에 관한 사항	가. 수익자총회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)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 시행 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. (추 가) 3)~5) (생략) 6) 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 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(추 가)	가. 수익자총회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)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 시행 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. 다만,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(이하 "손실보상기간") 동안 매일 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 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 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 액(이하 "신탁업자 손실보상금")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.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 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3)~5) (현행과 같음) 6) 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 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집합투자 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 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 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 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 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(법률자문료 등)의 합(이하 "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")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 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 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 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한다.
3. 집합투 자기구의 공시에 관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한 사항	<p>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②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 (추 가)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(추 가)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추 가)</p> <p>3)~4) (생략)</p> <p>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②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. 다만,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3)~4) (현행과 같음)</p> <p>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</p> <p>나.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</p> <p>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</p> <p>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</p>